

3. 파주시간이상수도조례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- 파주시 농촌지역 주민의 약 75%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으나 시설의 대부분이 노후화 되어 있으며 또한 시설의 운영·관리미흡으로 매년 10% 정도의 시설이 먹는물 수질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
-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점검과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운영·관리의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운영·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하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종전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만 조례로 규정하여 관리하였으나 소규모급수시설(시설용량 20톤/일미만, 급수인수 100인 미만인 시장이 지정한 시설)에 대해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(안 제1조, 제2조)
-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1회 이상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·관리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3조, 제6조, 제7조)
-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4조)
- 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·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22조)

□ 검토의견

- 동 조례 제7조를 보면 개정전 조례에는 간이급수시설을 연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던 것을 시민의 건강과 위생적인 운영·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
- 그러나 파주시에서 99년도에 16개소에 10억원, 금년도에는 16개소에 8억원 등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 개·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, 매년 10%에 달하는 간이상수도시설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이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보여지며,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시설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급지역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